

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
청산특별위원회

I·SEOUL·U
너와 나의 서울

주요업무보고

2021. 3.

문 화 본 부

1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서울특별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가 '21.1.7 제정·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 및 청산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2021.1.7. 시행)

□ 조례 주요 내용

- 목적(제1조) :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정의(제2조) : ‘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이란 조사·연구와 홍보 등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 침략 및 통치에 협력·동조했던 행위를 반성 하는 것을 말함
 - ‘친일반민족행위’란 「일제강점 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2012.10.22. 시행)」 제2조에 따른 행위 (※ 붙임1)
- 시장의 책무(제4조) : 역사적 진실 확인을 위한 시책 마련
- 실태조사(제5조) :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한 실태조사 실시
- 사업추진(제6조) :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사업 등 법인 또는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
- 위원회 설치(제7조) : 청산 지원 시책 수립, 청산 지원 사업의 평가 등 자문

□ 추진방향

- 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은 장기적 추진이 필요한 범국가적인 과제로 전문가 자문을 통한 방향설정,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서울시 실정에 맞춰 추진
- 서울지역의 친일반민족행위 실태조사를 통해 친일 관련 유물·인물·기록물 및 건축물 등 사례를 수집하고 구체적 청산 지원방안을 모색
-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콘텐츠 개발 및 홍보를 통해 친일 관련 행위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조사·연구분야 :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학술연구활동 등
- 교육·홍보분야 : 친일반민족행위 조사·연구 결과 마련한 청산 지원방안에 따른 교육, 홍보 등

○ 추진방법 :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추진이 가능한 관계기관 또는 단체 공모 지원

○ 지원규모 : 조사 및 청산지원 사업별 50백만원 이내

○ 소요예산 : 100백만원 이내 ('21년 추경을 통해 확보)

○ 추진일정(안)

친일반민족행위 실태조사 ('21.6월~11월)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후속조치 계획수립(연차별) ('22.상반기)		친일반민족행위 시민인식 제고를 위한 청산 지원 추진 ('22.9월~'23.4월)
• 친일 관련 유물, 인물 등 현황 실태조사	▷	• 청산 지원 기본방향 및 범위·기준 마련 • 청산 지원 후속조치 추진 계획 수립	▷	• 영상, 책자 등 홍보자료 발간, 배포
(관계기관 또는 단체)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관계기관 또는 단체)

□ 세부 추진계획(안)

① 친일반민족행위 실태조사

○ 추진방향 :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용역 추진

○ 추진일정 : 2021. 6 ~ 11월 (6개월)

○ 조사대상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각 호에 따른 행위
- 서울 지역에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친일 관련 유물·인물·기록물 및 건축물 등의 문화유산

○ 추진방법

- 관계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전수조사를 통한 사례수집
- 역사도시서울위원회 등 역사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친일반민족행위 등 청산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 및 범위·기준 마련, 시책 자문 등

- 활용방안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
→ 연차별 후속조치 추진계획 수립('22.상반기, 단기·장기 과제로 분류)

② 친일반민족행위 시민인식 제고를 위한 청산 지원 추진

- 추진방향 :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후속조치로 분류된 장·단기 과제별 사업 추진

- 추진일정 : 2022. 9 ~ 2023. 4월 (8개월)

- 추진내용 : 애국, 항일 관련 영상·전시·역사현장 체험 등 콘텐츠 개발



(서울) 친일문학 낭독 행사 ('17.5월)

○ 추진방법

- 전문용역을 통해 대시민 교육콘텐츠 제작·배포
- 서울역사편찬원 역사강좌 등 추진

- 활용방안 : 친일반민족행위 등 청산을 위한 시민 인식 제고



(경기)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캠페인 ('20.12월)

□ 향후일정

- 청산 지원 시행계획 관련 전문가 자문 및 계획 수립 : '21.3~4월
- 실태조사 용역 예산 편성(추경) : '21.4월 이후
- 친일반민족행위 실태조사 용역 : '21.6~11월
-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후속조치 추진계획 수립 : '22.상반기
- 시민인식 제고를 위한 청산 지원 용역 : '22.9~'23.4월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

1.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2.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감금·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3.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4.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그 단체의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수행하거나 그 활동을 주도한 행위
5.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을 저해한 행위
6.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7.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다만,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작위를 거부·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등으로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8. 일본제국의회 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9.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
10.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少尉)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1. 학병·지원병·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宣傳)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12.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동원한 행위
13.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15. 판사·검사 또는 사법관리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6.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 헌병 또는 경찰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7.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8. 동양척식회사 또는 식산은행 등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서 우리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
19.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
20. 일본제국주의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반출에 적극 협력한 행위

□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개요

- 근거 : 「일제강점 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2004.3.22 공포)
- 구성 : 대통령 소속으로서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위원 9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 (초대 위원장 : 강만길)
- 활동기간 : 2005. 5. 31. ~ 2009. 11. 30.
- 활동내용 :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한 국내외 자료 수집, 관련행위 조사 대상자 선정 및 조사, 친일반민족행위 관련 사료 편찬
- 활동결과
 - 친일인사 1,005명 공개(이완용, 민영휘, 최남선, 이광수, 현제명 등)
 - ※ 분야별 구분 : 정치(383명) / 관료, 군인, 경찰 등 통치기구(272명) / 언론, 종교 등 경제·사회(186명) / 문화(84명) / 해외(81명)
 -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을 기록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 발간(2009)
- 서울지역의 친일반민족행위자(예시)

인물명	친일 내용
 <p>임선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07년 이완용의 친일 내각에서 내부대신을 맡아 대한제국 고종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 체결 과정에서 적극 협력 ○ 1908년에는 탁지부의 수장인 탁지부대신에 임명되어, 일본 소유의 군과 철도 용지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하는 등 친일 행적 확인됨
 <p>이재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 말기의 관료이자 왕족, 대한제국의 관료이며, 일제 강점기에는 조선귀족 작위를 받음 ○ 을사조약 체결 과정에서 궁내부대신으로 일제의 뜻에 따라 고종을 협박하는 등 친일 행적 확인됨

'21.1.7 제정·시행된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의 실효적 추진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요약)

- ◆ 제1조(목적) :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
- ◆ 제2조(정의)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말한다.
 2.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의 사용을 말한다.
 - 가. "공공장소"란 제4조 기관(1~3호)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
 - 나. "공공행사"란 제4조 기관(1~4호)이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 ◆ 제4조(적용대상 기관)
 1. 市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2. 시의회 사무처
 3. 투자기관·출연기관·출자기관
 4. 제1호부터 3호까지 기관의 위탁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5. 제1호부터 3호까지 기관이 주관하는 사업·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 ◆ 제5조(시장의 책무)
 - ① 공공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노출, 소지, 판매·전시 행위방지를 위해 노력해야함
 -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제한 및 퇴장·철거 등을 요구
 - ④ 1개월 이상 설치·게시·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 ◆ 제7조(위원회설치) : 시책수립 및 상징물 판단 자문(비상설 11인 이내)
- ◆ 제8조(위원회구성) : 市 공무원, 비영리민간단체, 디자인, 일제강점기 역사전문가

※ 서울시의회 공식블로그 홍보자료



□ 추진단계

- [알림단계] 조례제정 알림 및 실태조사 시행
 - 적용기관 대상 조례제정 알림 및 홍보(서울시의회 공식 블로그 이미지 활용)
 - 적용기관 대상 최근 3년간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관련 논란사례 실태조사
- [준비단계] 시책수립 방향설정 등을 위한 위원회 설치·구성 → 기획회의
 - 조례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의 수립방향 및 “상징물의 범주” 등 자문
 - 기관 실태조사 결과 및 전문가 사례 발표를 통해 가이드라인 초안 마련
- [시행단계] 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한 운영종합계획 수립·시행
 - 조례 운영을 위한 운영체계 수립, 현장적용 가이드라인 배포
 -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논란시 위원회 안전상정 절차 및 기준 마련 등

□ 추진내용(안)

① 위원회 설치 및 구성 ※ 총 9명(간사 미포함)

- 설치 : 디자인정책과에 비상설 설치, 간사는 디자인정책과장
- 구성 : 市 공무원 1명, 비영리 민간(학교, 학회, 연구소 등) 3명, 일제강점기 전문가 3명(역사전문가 강화), 디자인 전문가 2명
※ 비영리 민간분야 중 국제관계 전문가 1명 포함
- 운영 :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관련 사회적 논란 또는 논란소지가 예견되는 경우, 비상설로 운영

② 운영종합계획 수립·시행의 주요골자

- “공공사용”의 3가지 유형별 관리주체 지정
※ 관리주체 : 자체점검(체크리스트) 및 현장감독(위반시 사용제한, 퇴장요구 등)

유형1

공공기관이 공공공간에서 행사하는 경우



행사 부서(기관)가 관리감독

- 예시 : 디자인정책과 주최 서울광장 행사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 보건환경연구원 주최 광화문광장 행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디자인재단 주최 다목적홀(실내) 행사 서울디자인재단

유형2**공공기관이 민간공간에서 행사하는 경우** → **행사 부서(기관)가 관리감독**

- 예시 : 디자인정책과 주최 코엑스 행사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 보건환경연구원 주최 킨텍스 행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디자인재단 주최 63빌딩 행사 서울디자인재단

유형3**민간이 공공공간에서 행사하는 경우** → **공간관리 부서(기관)가 관리감독**

- 예시 : 대한체육회 주최 서울광장 행사 서울시 총무과
- 대한불교조계종 주최 잠실운동장 행사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마라톤 협회 주최 여의도 한강공원 행사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

유형4**민간이 민간공간에서 행사하는 경우** → **동 조례 적용대상 아님**

- 예시 : 대한체육회 주최 킨텍스 행사

○ 현장적용 가이드라인 확정 배포

- 자체점검 및 현장감독을 위한 항목별 체크리스트 포함 가이드라인 배포

○ 위원회 안건 상정 절차 및 기준 등 마련

-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게시·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과 관련한 논란이 있을 경우, 위원회 상정을 통해 최종 심의·판단

□ 향후계획

- 적용기관 대상 조례제정 알림 및 실태조사 시행 : '21.3월
- 위원회 설치 및 구성 : '21.5월
 - 역사전문기관, 디자인단체, 연구소, 대학 등에 전문가 추천의뢰
- 운영종합계획 수립 : '21.8월
 - 현장 가이드라인 및 운영종합계획의 위원회 심의·확정
- 적용기관 배포 시행 : '21.9월